

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9.12.16 ( 수 ) 16:00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 
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#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영복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12월 8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2월 9일

3. 제안 이유

- 농어업·농촌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수정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농어업·농촌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과 미흡

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